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1819-0 금정경찰서

부산금정경찰서장 (문의 박성봉)

462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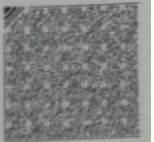
1073084341001 2023년09월21일 제작 [접수국 : 광화문]



보통등기

부 160 60 50
부산M 부산사하

부산 사하구 오작로 68
, 102동 101호 (괴정동, 신괴정화신아파트)
윤성민 귀하
49360



부산금정경찰서

제 2023-01029 호

2023. 9. 20.

수신 : 윤성민 귀하

제목 : 수사결과 통지서(고소인등·불송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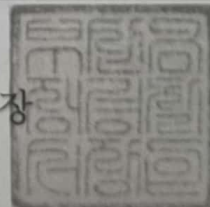
귀하와 관련된 사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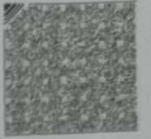
접수일시	2023. 6. 7.	사건번호	2023-002822
죄명	사기		
결정일	2023. 9. 20.		
결정종류	불송치 (혐의없음)		
이유	별지와 같음		
담당팀장	수사1팀 경감 김남주	☎	051-510-0041

※ 범죄피해자 권리 보호를 위한 각종 제도

- 범죄피해자 구조 신청제도(범죄피해자보호법)
 - 관할지방경찰청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신청
- 의사상자에우 등에 관한 제도(의사상자에우에관한법률)
 - 보건복지부 및 관할 자치단체 사회복지과에 신청
- 범죄행위의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명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 각급법원에 신청, 형사재판과정에서 민사손해배상까지 청구 가능
-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구조
 - 여성 긴급전화(국번없이 1366), 아동보호 전문기관(1577-1391) 등
- 뺑소니·무보험 차량에 의한 교통사고 피해자 구조제도(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1544-0049)에 청구 가능
-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이용한 피해자 구조제도
 -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관리실, 지역별 공단지부에 문의
- 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제도(국번없이 132 또는 공단 지부·출장소)
 - 범죄피해자에 대한 무료법률구조(손해배상청구, 배상명령신청 소송대리 등)
- 범죄피해자지원센터(국번없이 1577-1295)
 - 피해자나 가족, 유족등에 대한 전화상담 및 면접상담 등
- 국민권익위원회의 고충민원 접수제도
 - 국민신문고 www.epeople.go.kr, 청부민원안내콜센터 국번없이 110
-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 접수제도
 - www.humanrights.go.kr, 국번없이 1331

부산금정경찰서장





【별지】

【결정종류】

불송치(혐의없음) - 증거 불충분

【피의사실의 요지와 불송치 이유】

[피의사실의 요지]

1) 사기(주점 운영 투자금 관련)

2017. 4. 11. 알 수 없는 장소에서 "경남 거제시 거제대로 3730-2에서 '활빈정'이라는 상호로 주점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자금을 투자하면 투자금에 비례하여 수익을 배분해 주겠다"고 속여 피의자 명의 국민은행 계좌(1030-0000-0570-33)로 2,000만 원을 이체받아 사기.

2) 사기(경매사업 투자금 관련)

2019. 4. 12. 알 수 없는 장소에서 "경매 사업에 투자하면 경매 관련 교육을 해 주고, 경매로 낙찰받은 물건을 매매하여 발생하는 수익을 배분해 주겠다"고 기망하여 피의자 명의 국민은행 계좌(6695-0000-2715-54)로 160만 원을 이체받아 사기.

[불송치 이유]

[인정되는 사실]

- 피의자가 주점 운영, 경매사업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각각 2,000만원, 160만원의 투자금을 지급받은 사실.
- 위 사업은 지인간 투자가 이루어져 별도의 사업계획서나 투자약정서 등이 작성되지 않았고, 따라서 구체적인 매출 정산 시기나 방법, 수익배분 방식에 대해서도 논의되지 않음.
- 이사건 '활빈정' 주점과 경매 사업 관련 모든 진행은 피의자 주도로 이루어졌고, 준비과정 또한 피의자가 전담.



[주점 운영 투자금 관련]

가. 피해자 윤성민의 주장

피의자가 지인들에게 투자를 권유하여 주점 사업 투자금을 교부받고도 약속된 수익을 배분해 주지 않았으며, 주점 운영 기간 중 피의자로부터 수익이 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기는 했으나 실질적으로 정산을 하거나 확인한 내용은 없다고 진술.

나. 피의자 이대로의 주장

주점 운영 초기부터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고, 주점을 함께 운영하기로 한 윤성민은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함께하지 않아 자신이 대출을 받아 적자를 메우며 어렵게 영업을 했다는 주장.

다. 주점 운영시기

피의자 이대로의 국민은행 계좌 내역에서 카드 매출이 입금되는 시기로 보아 이 사건 활빈정 주점은 2017. 7월 하순경 영업을 시작하였고, 피의자가 교통사고로 입원하였던 2019. 11월경까지 영업을 하였던 것으로 확인됨.

라. 투자금 사용처

피의자의 국민은행 계좌 내역으로 보아 2017. 4. 11. 투자금을 이체받은 시기부터 2017. 9. 30.까지 130,951,492원이 입금되고, 130,798,928원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다.

마. 피의자가 주장하는 주점 운영 손익

피의자는 2017. 7. ~ 2019. 11. 사이 매출 손실을 합계는 40,510,098원이고, 수익이 발생한 월수를 감안하면 약 2년 2개월간 23,051,014원의 손실을 보았다고

주장한다. 이외 카드 사용 내역 등을 제출하였으나 카드 사용내역만으로는 어떠한 결제내역이 이 사건 주점 운영과 관련된 것인지 판단할 수 없다.

바. 투자금 반환

피해자의 요청으로 2019. 7. 19. 피의자가 투자금 1,000만원을 반환한 것으로 확인된다. 사건의 투자자 이병창에게도 투자금 일부를 반환한 것으로 확인된다.

[의견]

피의자가 투자금을 지급받아 주점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였던 사실 인정되고, 주점 운영 중 피해자를 포함한 투자자들 모두 주점 수익 정산을 진행하지 않았으며, 사업 진행 과정에서 투자금이나 매출의 사용 가능 용도를 분명히 하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피의자가 사업과 관련된 모든 과정은 전적으로 진행하여 피의자의 카드, 계좌를 확인하더라도 그것이 정상적인 용도로 사용된 것인지 확인 불가할 뿐만 아니라 투자금 상당 부분이 투자자들에게 반환된 점으로 보아 달리 피의자가 주점 운영 수익을 정산할 의사도 없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았다고 인정할 증거 부족하여 피의자의 주점 사업 관련 사기 혐의는 불송치(혐의없음)한다.

[경매 사업 관련]

가. 피해자 주장

피의자가 경매사업에 투자하면 경매 교육, 투자자의 경매 컨설팅, 투자금으로 경매 물건을 낙찰받아 발생하는 수익을 배분해 주겠다고 했으면서도 약속 이행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

나. 피의자 주장

피해자가 참여한 경매 사업은 교육만 받을 경우 150만원이고, 150만 원을 추가하면 경매 사업으로 발생하는 수익을 배분받을 수 있다.

경매 사업의 내용은 외부 고객의 경매 컨설팅 및 교육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을 배분하는 것이지 투자금으로 경매 물건을 낙찰받는다든 내용은 없었다.

실제 사무실을 마련하고 사업 준비를 하였으나 자신의 교통사고로 인해 사업이 무산되었을뿐 투자금을 편취할 의사는 없었다는 주장

다. 경매사업 투자자 진술

000은, 이대호가 주도하여 지인 6~7명에게 경매 사업에 참여를 권유하여 자신도 300만원을 투자하였으며, 사업의 내용은 컨설팅과 교육 두가지 였는데 컨설팅은 외부에서 경매 컨설팅을 요청받게되면 컨설팅을 해 주고 지급받는 수수료를 사업 참여자들간 배분하는 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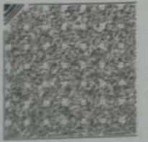
교육은 경매를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교육을 해 주고, 그로인해 발생하는 수익을 배분하는 것이었는데, 기본적으로 사업 참여자들에게는 경매 관련 교육을 해 주고, 이후 교육을 받은 참여자들 중 2~3명이 외부 고객에게 직접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설명이었다.

그런데 투자 이후 이대호가 교통사고로 인해 1년여간 활동을 하지 못해 사업은 무산되었다는 진술이다.

000은, 자신도 300만원을 이대호에게 투자하였으며, 사업의 내용은 000의 진술과 같으며, 거기에 더해 사업 참여자들이 경매에 참여하게 되면 컨설팅을 해주기로 했었는데 초기 사업 자금이 경매 물건을 낙찰받는데 사용하기로 한 비용은 아니라는 취지의 진술이다.

라. 피의자 제출 자료

피의자는 경매 사업을 위해 사무 공간을 임대하고, 관련 비품을 구입하였다



며 임대계약서와 카드 사용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마. 투자금 반환 내역 제출

경매 사업에 참여하였던 사건의 김승철이 투자 철회 의사를 밝혀 2019. 10. 23. 투자금 300만 원을 반환하였다고 거래내역을 제출하였다.

[의견]

피의자가 실제로 경매 관련 교육을 진행하였던 점, 사업을 위해 준비했던 사실을 마련하는 등 준비를 하였던 사실이 확인되는 점, 인접한 시기 교통사고로 인해 장기간 병원에 입원하였던 점, 사업에 참여하지 않으려는 투자자에게는 투자금을 반환하였던 점 등으로 보아 피의자가 경매사업이나 수익 배분 의사 없이 투자금을 받아 편취하였다고 인정할 증거 부족하다.

따라서 피의자의 경매 사업 관련 사기 혐의는 증거 불충분하여 불송치(혐의없음)한다.

※ 결정 종류 안내 및 이의·심의신청 방법

<결정 종류 안내>

- 혐의없음 결정은 증거 부족 또는 법률상 범죄가 성립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는 결정입니다.
- 죄가안됨 결정은 피의자가 14세 미만이거나 심신상실자의 범행 또는 정당방위 등에 해당되어 처벌할 수 없는 경우에 하는 결정입니다.
- 공소권없음 결정은 처벌할 수 있는 시효가 경과되었거나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를 취소한 경우 등 법률에 정한 처벌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처벌할 수 없다는 결정입니다.
- 각하 결정은 위 세 결정의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하거나, 고소인 또는 고발인으로부터 고소·고발 사실에 대한 진술을 청취할 수 없는 경우 등에 하는 결정입니다.

<이의·심의신청 방법>

- 위 결정에 대하여 통지를 받은 자(고발인은 제외)는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1항에 의해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이 있는 때 해당 사법경찰관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2항에 따라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게 됩니다.
- 수사 심의신청 제도(경찰민원콜센터 국번없이 182)
 - 수사과정 및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관할 시·도 경찰청 「수사심의계」에 심의신청